## 4-3 재창업자금

- □ (대상)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중소기업을 설립한 업력 7년 미만(신산업(참고 1-1) 창업 분야 중소기업은 10년 이내) 재창업기업 또는 예비재창업자로, 아래의 유형(①~③)을 모두 만족하는 자\*설립 7년 미만(신산업 창업 분야 중소기업은 10년 이내) 법인기업을 인수한 경우도 포함
  - ①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인 또는 한국신용정보원의 '일반 신용정보 관리규약'에 따라 공공정보(파산면책결정, 회생인가, 신용

회복확정, 채무조정확정 등 신용회복지원)가 등록되어 있는 자

- ②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재창업자
- 폐업 이력을 보유(폐업을 완료할 것)한 자로, 현재 재창업기업의 대표(이사)
- \* 과거 폐업 개인기업의 대표자이거나, 폐업 법인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기업주
- 폐업 기업의 업종이 아래의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자 비영리업종, 사치향락업종, 주점업, 금융 및 보험업, 부동산업, 공공행정,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, 가구 내 고용 및 자가 소비·생산활동, 국제 및 외국기관
- ③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에 따른 성실경영평가를 통과한 자
- (성실경영평가) 재창업지원 사업 신청자가 재창업 전 기업을 분식회계, 고의 부도,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등을 평가
- ※ 위 재창업자금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,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별도 지원방식을 통해 지원 가능
  - 연체 등 정보가 등록된 신용미회복자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과 재창업 자금 동시 지원이 필요한 경우
  - \* (지원방식) 신복위 접수  $\to$  중진공·신보·기보·NICE평가정보·한국평가데이터 중 한 개의 기관이 평가  $\to$  위원회 심의  $\to$  신보·기보 보증서 발급  $\to$  신용회복 처리 후 중진공 대출

## ※ 재창업자금 우대 사항

- 융자계획 공고 皿.유의사항(융자제한기업) ③항(세금체납기업) 적용 예외 (단, 압류·매각의 유예에 한함)
-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기업은 우선 접수하며, 융자상환금조정형 대출로 신청 가능
  - \* 중기부 재도전성공패키지사업 또는 TIPS-R 선정,정부의 R&D사업 선정, 특허·실용신안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재창업 후 동 기술을 사업화 중이거나 사업화한 기업, 재도전Fund 투자유치, 과기부 ICT 재창업 사업 선정, 혁신성장분야(참고1) 영위, 소재·부품·장비산업(참고4) 영위기업

## □ (융자방식) 직접대출, 대리대출

## □ 대출조건

구분	대출 조건
대출한도	(직접·대리대출) 연간 60억원 이내 (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)
대출기간	(직접·대리대출, 시설) 10년 이내 (거치기간 : 4년 이내) (직접·대리대출, 운전) 6년 이내 (거치기간 : 3년 이내)
대출금리	(직접·대리대출) 정책자금 기준금리(변동) *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기업은 금리 우대(△0.3%p)
기 타	<ul> <li>업력 1년 미만 기업의 경우에는 역량평가와 초기재창업심의위원회 평가를 합산한 결과로 융자 여부 결정</li> <li>융자상환금조정형은 대출한도 5억원 이내에서 직접대출로 운영</li> <li>별표3(용도별 대출한도 우대기준, p44)에 해당하는 기업은 대출한도 우대 가능(융자상환금조정형 제외)</li> </ul>